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30361

최초등록일2013-11-7

최종등록일2023-

영 동 족 발

정 보 공 개 서

(주)영동족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영동족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8, 605호(양재동, 단성오피스텔 605호)

[전화번호] 070-7670-6382

[팩스번호] 02-529-6382

[담당부서] 070-7670-6382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 보 공 개 사 항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주)영동족발의 “영동족발”)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영동족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일	2013년 07월 05일		
법인설립등기일	2013년 07월 05일	사업자등록일	2013년 07월 10일
법인등록번호	110111-5176163	사업자등록번호	264-81-18404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가맹본부	(주)영동족발	(주)영동족발	영동족발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8, 605호(양재동, 단성오피스텔)
특수관계인 (임원)	정용철(대표)		대표자	대표번호
	정재미(이사)		정용철	070-7670-6382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국내 자생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직전 3개년 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영동족발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아래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영동족발	출원일:2012.03.30 등록일:2012.10.10 출원번호: 제 2012-0011293호 등록번호: 제 41-0241911호
상 호	영동족발 00점	
상표(서비스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재무상황입니다.

(단위:천원/VAT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28,290	484,936	1,543,353	3,870,839	52,828	49,559
2022년	2,068,239	556,083	1,512,156	4,040,629	70,810	71,145
2023년	2,088,719	658,912	1,429,807	4,562,949	121,680	102,830

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가’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용철	대표	2009.07~현재	영동족발 개인사업 대표	총괄관리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재미	이사	2009.07~현재	영동족발 개인사업 이사	영업관리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법인 설립 전) 사업연도 말 점포 인력을 포함하여,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설립년도 : 2013년)

시점	임 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2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영동족발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영동족발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현황

브랜드 명	상호	로고
영동족발	영동족발00점(해당 지역명 표기)	

2) 사용허락 지적재산권

구분	출원 명칭	권리 범위	등록 및 등록 신청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서비스표	영동족발	상호 간판	출원일: 2012.03.30 등록일: 2012.10.10	출원번호: 제2012-0011293호 등록번호: 제41-0241911호	(주)영동족발	2032. 10. 1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영동족발을 시작한날 : 2013년 12월 5일

(영동족발의 상호로 점포영업을 시작한 년도는 1985년 입니다.)

2. 영동족발 연혁

당사의 법인 설립일은 2013년 7월입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3년 12월 5일입니다.

3. 최근 3개년도 말 영동족발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영업표지	업종	
영동족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족발

4. 최근 3개년도 말 영동족발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7	4	3	7	4	3	7	4	3
서울	6	4	2	6	4	2	6	4	2
세종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동족발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단위 : 개)

연 도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4	•	•	•	•	4
2022	4	•	•	•	•	4
2023	4	•	•	•	•	4

6. 영동족발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영동족발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2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4	459,199	35,292	636,757	101,497	226,969	17,475	
서울	4	459,199	35,292	636,757	101,497	226,969	17,475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영동족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367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비용(단위 : 천원 / VAT 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2023.1.1 ~ 2023.12.31	8,888	8,888	0	
광 고 (인터넷)	소 계	2023.1.1 ~ 2023.12.31	8,888	8,888	0	
					0	
판 촉	소 계		0	0	0	
	0		0	0	0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온라인 www.hanaescrow.com	1599-1114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은행)

항 목	내용	비고
가맹점 사업자 인터넷 가입 및 가맹금 예치 (에스크로)	①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② www.hanaescrow.com 의 “조회센터”→B2B→“프랜차이즈 B2B” 클릭 후 가맹점ID/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영동족발”선택 클릭→약관 및 가맹점 사업자 정보 입력→전자서명(공인인증서)	

	④가맹점 사업자 에스프로 가입완료 ⑤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입금계좌 번호로 가맹금을 입금함	
에스프로 콜센터 안내	1599-1114 가맹점 사업자의 가입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영동족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1980만원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300만원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일 경우)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브랜드 사용 및 상권보호 2. 운영 및 조리 매뉴얼 제공 3.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 제공	14,3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입지 상권 조사비	개점전 입지상권조사 자문 및 지원	2,200	입지상권조사 지원 실시 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규정에 따른 상계처리 후 반환	입지상권조사 지원 실시 후 반환 안됨
교육비	개점전 이론,실습,실무교육	3,300	교육실시 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규정에 따른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 실시 후 반환안됨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은 당사 직원 파견에 따른 숙식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일 경우)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수자가 잔존계약기간 동안만 양수 시에는 해당 가맹점 시스템에 따른 교육비만 지급하고 교육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영업에 필요한 정보 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운영 및 조리매뉴얼포함) 2. 홍보 판촉의 대가	14,3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이론, 실습, 실무교육	3,300	교육실시 후 반환안됨	교육 실시 후 반환안됨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종료 시 정산 후 반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포함)의 3배 이내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VAT포함)/단위:천원
합 계	22,800
가맹비	14,300
입지상권조사비	2,200
교육비	3,300
보증금	3,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영동족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VAT포함/단위:천원)

품목	금액 [66m ² (20평) 기준]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인테리어	38,000	평당 1,900	계약 체결 시 개별 계약	설치 전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점포외장	기본(3.3m ² *6)6,600			
간판	전면 1식: 6,600			
주방기기	1식 : 14,300			
집기(주방, 의탁자 등)	1식: 9,900			
오픈판촉	2,200			
초도식자재	9,141			
합계	86,741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은 경비가 추가됨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² 기준으로 175천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부가세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22,800	계약 체결 시
중도금	75,400(오픈판촉, 초도식자재를 제외한 금액)	공사착공1일전
잔금	11,341(오픈판촉, 초도식자재 비용)	공급품 입고3일전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구분	가맹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후 3 일~개점전 까지	개점후
가맹비	예치금의 10%는 위약별로 반환되지 않음	예치금의 50%금액은 위약별로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비용으로 반환없음
입지상권조사비	지급된 금액의 100% 단, 입지상권조사 지원 진행 시 반환되지 않음	입지상권조사 지원 진행 시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지급된 금액의 100% 단, 교육진행 시 반환되지 않음	교육진행시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지급된 금액의 100%	‘을’의 미행채무를 상계한 나머지금액	‘을’의 미행채무를 상계 한 나머지금액
인테리어시공비	시공전(10% 위약별로 반환되지 않음)	시공후 (시공 진척도에 따라 상환액 결정)	반환되지 않음
감리비	지급된 금액의 100% 단, 설계도면 착수 시 지급된 금액의 50%	설계도면 및 정보제공 후에는 지급된 금액의 10%반환	검수 후 반환 되지 않 음
주방설비 및 홀 설비비	지급된 금액의 100%	물품 및 설비제공 후 반환 되지 않음	검수 후 반환 되지않음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후불제로서 반환 되지 않음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영동족발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희망자	1) 가맹점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가맹점희망자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희망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희망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가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작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개점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 천원, VAT별도)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본사의 관리, 감독에	가맹본부	매월 매출액의 2%	매월 10일	후불제로서 반환 안됨

	대한 대가 운영(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이후 교육비	특별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서울 외의 지역은 숙식과 교통비가 추가 될 수 있음)	개별 청구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관측 분담비	가맹 본부	공동 관측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관측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관측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관측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 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브랜드 및 상품광고에 소요되 는 비용은 본부가 50%, 가맹 점사업자측이 50%를 부담]하 며,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가 맹모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부가 75%, 가맹점사업자측 이 25%를 부담]하며, [가맹모 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부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맹 점사업자측의 비용부담은 가맹 점사업자의 총수비율에 따라 본부가 배분하여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단, 가맹점사업 자의 해당 영업구역을 중심으 로 한 단독 광고는 가맹점사업 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지급금액을 지연했을 경우	가맹 본부	연 6 %	지급 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 하는 날 까지	월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			해당없음		
---------------------------	--	--	------	--	--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19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당사는 차액가맹금(물류마진 등)이 없습니다. (직접 당사에서 생산하는 즉발 제외)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 포스 입력을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비용은 최초 가맹금 중 교육비, 개업지원 대가,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를 제외한 재계약기간동안의 영업표지 사용대가의 명목으로 금 오백오십만원 정(5,500,000원/부가세포함)을 추가 납입하여야 재계약이 유효합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

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양수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납입하고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영동족발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영동족발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영동족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3.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영동족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영동족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영동족발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통상적으로 동종 유사 족발전문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 및 용역 당사로부터 승인 거절된 상품 및 용역	좌측 상품·용역명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29%	71%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사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함)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의 서면통지→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지 않음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지 않음

사.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영동축발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됩니다.(참조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3. 가맹계약 종료 후의 부담)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乙”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乙”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乙”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8조 1항 [가맹계약의 갱신, 재계약 등]

다.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乙”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乙”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乙”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乙”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乙”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甲”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甲”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甲”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4. “乙”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乙”의 채무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6. “乙” 또는 “乙”의 직원이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7. “乙”이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甲”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8. “乙”이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9. “乙”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乙”이 “甲”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乙”이 “甲”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12. “乙”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甲”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3. “乙”이 가맹점운영의 부실로 매출이 부실하고 “甲”의 브랜드 인지도 실추가 우려되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甲”이 판단 할 경우	제43조 -①항 [계약당사자의 일반 해지권]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乙”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점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된 경우 2. “乙”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乙”이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	제43조-②항 [계약당사자의 일반 해지권]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항 본문에 따른 “甲”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甲”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乙”이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8. “乙”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2020년 4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일괄 수정한 것으로, 가맹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3) 그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처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가맹점의 설비, 가입비 등을 제외한 정보공개서상의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영동족발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영동족발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족발 및 보쌈을 주로 한 안주와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의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동족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정오 ~ 익일 오전 2시(영업준비시간 제외) 단, 상권에 따라 조정 가능	월25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가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수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 근무
20평	주방 : 2 홀 : 2	○
30평	주방 : 2 홀 : 3	○
40평	주방 : 2 홀 : 4	○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50 %		50%		광고 계획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지급
가맹모집 광고	100%		0%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모집 광고	75%		25%			
가맹점사업자 들의 해당영업구역 중심 광고	0%		100%			
관측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 가 50%)	할인금액 (소비자 가 50%)	행사계획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관측, 구인, 광고비, 직접 제공하는 경품 · 기념품 · 팸플렛 전단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관측행 사 동의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 동		
	팸플렛등 제작	관측물 제작비용 50%	관측물 제작비용 50%	상 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상동		
할인카드·멤버 십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및 관측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관측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측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이후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조로 당사에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할 경우, 가맹점 개점일까지 대략 30~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1.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컨셉 및 시스템이해 - 창업계획	-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정보공개서 제공 14 (가맹거래사 자문서 7일 후 계약)	
점포 계약	- 점포개발 착수 - 후보지 선정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 계약 및 예치금 입금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예치 (당사 거래은행)	1일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	1일	
도면 작성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3일	
인테리어 공사 및 점주교육	-인테리어 공사 실시	약25일	
	- 본사이론교육 - 매장실무교육	2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약3-7일	
개점	-개점리허설(담당 S/V 판단 후 개점결정) -오픈 행사(점주 요청 시) -사후관리	D-day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상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점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 :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영동족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후 Test를 실시하여 불합격 시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영동족발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점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2주	3,300(1인 추가 시 주당 50만원씩)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	기본이론교육은 무료, 전문강사 초빙 등 특수사항은	-

		협의	
특별 교육	-	협의(단, 현장실습 및 교육은 특별비용 발생 / 서울 외 지역은 숙식 및 교통비 등 실비발생)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역	직영점명	주소
서울	영동족발 양재3호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8-18(양재동1-8)
서울	영동족발 방이점	서울 송파구 오금로13길 3-20(방이동 64-3)
경기	영동족발 위례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8-5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10년 이상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520,98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끝.

별첨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증(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영동족발』의 『영동족발』
정보공개서를 정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수령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민번호 :
수령자 주소 :
전화/휴대폰 :

(주)영동족발 대표 :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